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15
----------	-------

발의연월일 : 2014. 6. 9.

발 의 자 : 박기춘 · 김관영 · 부좌현
김민기 · 박수현 · 김성곤
이운석 · 정세균 · 박지원
문희상 · 박혜자 의원
(11인)

제안이유

2014년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건축물 붕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번 사고는 현재의 건축설계기준이 최근 기후이변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등 새로 개발된 특수구조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 설계와 시공을 하게 되고, 허가권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최근 찾아지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신기술·신공법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축물의 설계, 인허가, 시공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도록

록 하는 등 제도 개선하여 건축물의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박판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68조의3 신설).
- 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안 제106조 제1항).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수구조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장에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특수구조건축물의 <u>특례</u>)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공중(公衆)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